



한국건강증진개발원-국민체육진흥공단  
**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**

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국민건강실천을 정립하고자 건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상호 신의 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목적**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협력사항**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.

1. 전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신체활동 분야 공동 사업 발굴 및 수행에 대하여 상호 기술 지원 및 자문
2.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개발, 지식정보 공유 및 대국민 홍보활동
3. 건강증진과 신체활동 등 관련 이슈 또는 연구결과 등에 대한 학술 행사 및 대국민 행사 공동 개최
4. 건강 증진 및 신체 활동을 위한 관련 지식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
5. 본 협약서 이외에 상호 관심사항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력

**제3조 비용**

본 업무협약에 의한 협력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한다.



#### 제4조 보안

1. 본 업무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및 문서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,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2. 양 기관은 협약이행·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를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####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, 협약 해지

1.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지정하며, 기간 만료 후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재설정 할 수 있다.
2. 협약 기간 중 협력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,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.

#### 제6조 기타

양 기관은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1.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1월 19일



한국건강증진개발원

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

원 장 조 인 성

조 인성



서울올림픽기념  
국민체육진흥공단

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

이사장 조 재 기

조재기